

그런데 專門委員의 지적도 있었듯이 北漢山國立公園管理權移管促求建議案을 보면 국회의 소관 상임위 및 주무부처가 잘못 표기되어 있고, 주문의 行政自治部를 環境部로 해야 되고, 건의처인 行政자치위원회를 환경노동위원회으로, 行政自治部長官을 環境部長官으로 해야 하고, 建議文案에 行政自治部를 環境部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金在實委員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무부처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金在實委員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정 있으십니까?

(『재정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金在實委員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金在實委員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본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北漢山國立公園管理權移管促求建議案은 金在實委員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北漢山國立公園管理權移管促求建議案

(뒤에 실음)

○委員長 金鍾來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委員님들과 環境管理室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24일 의사일정은 장기미보상 수도 용지에 대한 보상요청에 관한 청원심사와 99년도 上水道事業本部 業務報告의件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9時 02分 散會)

### ○出席委員

金鍾來	金在實	金鎬一
金寬洙	金恩京	金判吉
金興植	朴來雨	宋美花
柳辰永	李成浩	車星煥
金基星	李松竹	李聲九

### ○委員아닌出席議員

任安淳

### ○専門委員

金南中

### ○出席公務員

環境管理室

室長	都明正
公園綠地課長	崔容豪
造景課長	朴仁圭

###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이 관축구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6
----------	-----------

발의년월일 : 1999년 2월 23일  
발의자 : 김재실의원 외 1인

### 1. 주 문

1998년 12월 23일 임안순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이 관축구건의안”의 표지부상의 주문 및 전의처에 표기된 “행정자치부”를 “환경부”로 하고, 전의처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환경노동위원회”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며, 아울러 전의안 본문내용 중 “행정자치부”를 “환경부”로 변경·수정함.

### 2. 제안이유

국립공원관리공단 주무부처(관리청)가 1998년 2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음에 따라 관련부처 및 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이 관축구건의안

의안 번호	176
----------	-----

발의년월일 : 1998년 12월 23일  
발의자 : 임안순의원 외 15인

###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환경부의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의 주산이며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지방자치시대에 합당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 조기에 이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 2. 제안이유

- 북한산은 다른 국립공원과는 달리 도시자연공원적 성격과 균린공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서울의 주산으로서 대부분 서울시민들이 수시로 오르내리는 시민들의 산이다. 따라서 북한산의 보호 및 관리책임은 당연히 서울시민들의 몫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의 뜻과 다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오염, 자연훼손 등 문제점이 적지 아니하므로 하루속히 서울시로 관리권을 이관받아 시민을 위한 산으로 완벽하게 보호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 전체 의원의 결의로서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권을 서울특별시로 조기에 이관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제안함.

### 3. 견의처

- 국회의장(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 환경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

####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이관촉구건의문(안)

북한산국립공원은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에서 비교적 잘 관리하다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여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행정개혁의지와도 상치되는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서울시에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 첫째,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공

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둘째, 관할 지방자치단체간의 독자적인 개발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셋째, 공원의 종합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공단에서의 공원관리 실태를 보면 자연보호 투자인색과 수입증대 위주의 공원 운영으로 공원의 환경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무성의하고 무기력한 관리로 공원내의 불법시설물이 늘어나고, 악덕상행위와 탈법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으며, 비전문적인 삼림관리로 삼림생태계는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북한산국립공원을 보존하고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공단의 비협조와 법적 관리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결도는 실정입니다.

북한산은 다른 국립공원과는 달리 도시자연공원적 성격과 균린공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서울의 주산으로서 대부분 서울시민들이 수시로 오르내리는 시민들의 산입니다. 따라서 북한산의 보호 및 관리책임은 당연히 서울시민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의 뜻과 다르게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오염, 자연훼손으로 인한 황폐화 등 문제점이 적지 아니하므로 하루속히 서울시로 관리권을 이관받아 시민을 위한 산으로 완벽하게 보호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의 서울시로의 이관은 서울시민의 사랑 속에 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국민정부의 행정개혁 의지와도 일치하는 지방화시대의 시대적인 편연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 전체의원은 환경부의 산하기관인 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 조기에 이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8. 1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